

- 부평구문화재단 - 2022년 종합감사 결과(1)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과 적정성을 살피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

I 감사실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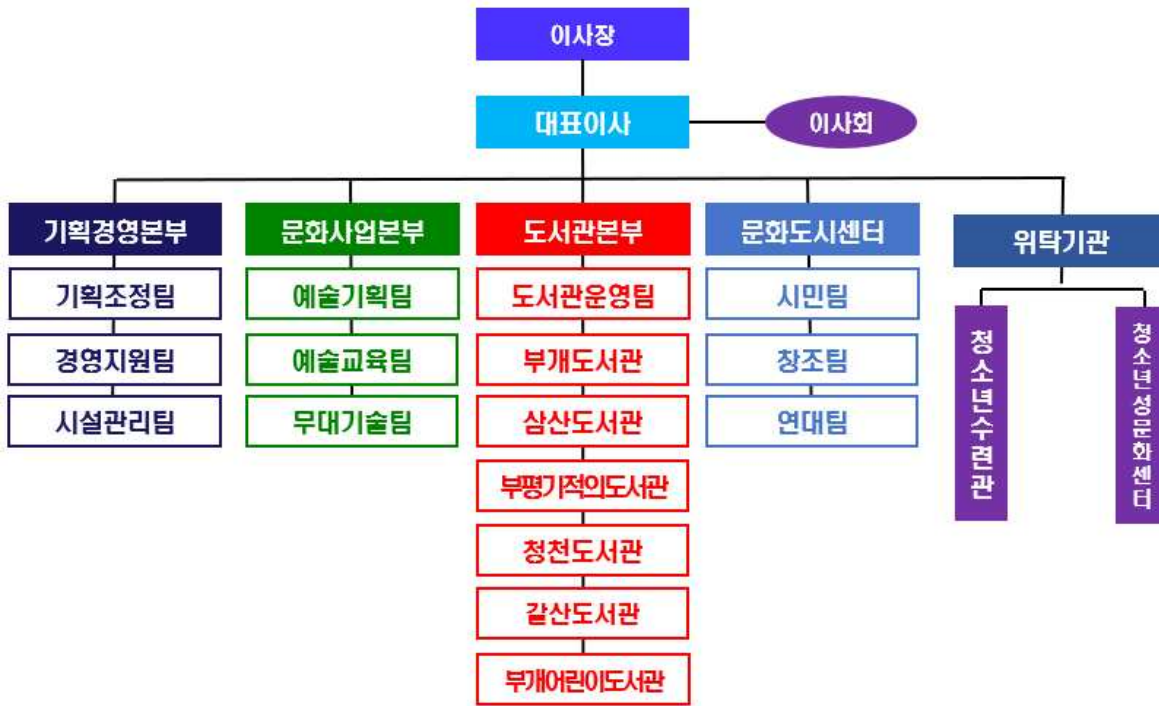
- (감사기간) 2022. 6. 13.(월) ~ 6. 24.(금) [10일]
- (감사범위) 2020. 7. 1. ~ 2022. 5. 31.(최근 2년)
- (감사반) 8명(공무원 7명, 공인회계사 1명)
- (감사대상 사무)
 - (고유사무) 조직, 인사, 예산회계, 시책, 민원처리 등 전반
 - (시설운영)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등
 - (위탁사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관리 전반
- (감사방법) 서면감사, 실지감사 병행
- (중점 감사사항)
 - 재단 및 수탁기관의 조직, 인사, 복무 등 관리 실태 전반
 - 예산회계, 계약, 시설운영 등 투명성 및 적법성
 - 위탁사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추진의 적정성
 - 후원회 및 운영단체 관련 사항 전반
 - 재단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등

II

감사기관 현황

□ 기본현황

- (설립일) 2006.12.4.
- (조직 및 현황) 3본부 1센터 10팀 6개관(위탁기관 2기관)



□ 정원 및 현원 현황

(기준일 : 2022.5.1.)

구분		정원	현원	2022년 예산액	비고
계		123	111		
재단	기획경영본부	22	21	18,471,537천원	
	문화사업본부	23	20		
	도서관본부	42	42		
	문화도시센터	18	15		
위탁기관	청소년수련관	13	10		
	청소년성문화센터	5	3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12.4. 설립되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전문화된 예술교육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부평구민의 문화와 여가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음.

특히,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소통해 온 결과, 부평구가 202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2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어, 구민이 주도하는 문화다양성과 문화거버넌스, 지역 선순환의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 조직, 인사, 예산회계, 위탁 사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재단운영, 복무, 회계 분야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하여 재정상 1,959,280원(추징·회수 1,391,540원, 추급 567,740원)의 조치가 필요함.

○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결과는 구청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할 것임.

2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총괄

(단위: 건, 천원)

구분	합계			징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수	재정상	신분상			소계	환수	추급	기타			
본처분	13	1,959	-	-	-	8 1,959	3 477	1 568	4 914	4	-	1
현지처분	2											

□ 처분요구 등 일람표

처분 번호	분 야	제 목	처분 요구	재정상 조치금액 (원)	신분상 조치 (명)	비고
계		13건	시정 8건 주의 4건 권고 1건	1,959,280	-	
22-45	재단운영	문화재단 임원 구성 소홀	시정			
22-46	재단운영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미운영	시정			
22-47	복 무	보상휴가 사용 부적정	주의			
22-48	회 계	퇴직자 복지포인트 미환수	시정	222,000		
22-49	회 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2-50	회 계	계약 업무 추진 소홀	주의			
22-51	물 품	공유재산 사용료 미부과	시정	914,540		
22-52	규 정	시설 대관 사용료 관련 명확한 기준 부재	권고			
22-53	회 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주의			
22-54	회 계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40,000		
22-55	회 계	[청소년수련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미사용	시정			
22-56	회 계	[청소년수련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115,000		
22-57	회 계	[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567,740		

3

주요 지적사항

번호/제목	[22-45] 문화재단 임원 구성 소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및 「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임원으로 두어야 하며, 감사는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감사는 구의 관리감독 부서의 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여야 함. ○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은 2022년 6월 감사일 현재, 선임직 감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음.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시정</p> <p>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선임직 감사 1명)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46]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미운영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은 기부금의 채납 및 집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부금품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성된 기부금품 관련 사업계획 및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회의에 부의된 기부금품 관련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은 2019년 7월 13일 이후 기부금품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시정</p> <p>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운영내규에서 정한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47] 보상휴가 사용 부적정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대상이며, 성과급적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고 기본연봉에는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이 포함되어 지급된다. ○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보수규정」 제7조의3(관리업무수당)에 따

	<p>르면 대표이사 및 임기직 ‘나’ 급 ~ ‘라’ 급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기본 연봉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시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취업규정」 제35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재단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 또는 과반수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p> <p>○ 그러나 보상 휴가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보상휴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였다.</p>
<p>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p>	<p>▶ (행정상)주의</p> <p>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부적정하게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p>번호/제목</p>	<p>[22-48] 퇴직자 복지포인트 미환수</p>
<p>지적사항</p>	<p>○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임직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선택적복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 1. ~ 12. 31.로 하며, 휴직·퇴직 등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적용이 제한·정지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을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한다.</p> <p>○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2020. 10. 31. 퇴사한 직원이 그해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함에 따라 11월, 12월분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환수하지 않았다.</p>
<p>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p>	<p>▶ 시정</p> <p>복지포인트 222,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p>번호/제목</p>	<p>[22-4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p>
<p>지적사항</p>	<p>1. 행사홍보비 집행 부적정</p> <p>○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초청장, 현수막 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등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에 집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p>

	<p>○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10월 직원 워크숍(부평 근현대 역사공간 탐방-워킹투어) 진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행사홍보비로 집행하였다.</p> <p>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p> <p>○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함.</p> <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단순히 내부 직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p> <p>○ 그러나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2022. 4. 6. 청소년교육문화팀과 청소년활동팀을 대상으로, 2022. 4. 15. 청소년지원팀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의 노고 격려를 위한 증·석식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p>
<p>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p>	<p>▶ (행정상)주의</p> <p>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 처리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50] 계약 업무 추진 소홀
<p>지적사항</p>	<p>1. 수의계약 가격협상 소홀</p> <p>○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인 경우 등 예규에서 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고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평구는 재정여건에 따른 계약업무 세부 방안을 매년 ‘수의계약 운영계획’으로 각 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p> <p>○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177건(5백만 원 이상) 중 6건을 제외한 171건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에 별도의 가격</p>

협상 없이 견적금액을 100% 수용, 계약하여 계약업무에서 필요한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판단을 소홀히 하였다.

2. 감독지정 및 준공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 제6장 선금·대금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등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은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한 지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3천만원 이상)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42조(계약의 검수), 제43조(검수조서의 작성), 제44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용역·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최근 2년간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시 그 이행을 감독하게 할 담당직원(감독)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계약 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 전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직원(감독)이 검사(검수)를 이행한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계 및 청구서 대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3.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부적정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매입금액은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대금청구 금액의 2/100(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이며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문화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의 winter magic show’ 공연 사업비 3,300천원에 대하여 65천원이 아닌 7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다.

	<p>4. 계약의 대가 지급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경기침체 등 코로나19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2020.07.15.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3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창의공작 목공 메이킹 사업’을 운영하면서 2020. 9. 25.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상당 기간 지연한 2020. 10. 14. 대가를 지급하였다. <p>5. 계약의 대가 지급 시 보험완납증명서 미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2021 ○○○ 겨울 콘서트’, ‘인음챔버오케스트라 호락호락콘서트’ 공연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하나만 첨부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였다.
<p>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p>	<p>▶ (행정상)주의</p> <p>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 처리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51] 공유재산 사용료 미부과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의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부평아트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914,540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 시정 해당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하여 절차에 맞게 사용·수익허가를 하시고 미징수한 사용료(5개년분) 914,54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제목	[22-52] 시설 대관 사용료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지적사항	○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평아트센터에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이 있다. ○ 해당 조례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는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행사로 구분지어 사용료를 달리 받고 있으며, 순수예술은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이지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가 모호하여, 2021년 인디밴드 등의 공연이 포함된 토크콘서트와 가요연주가 포함된 재즈밴드의 재즈공연은 신청서에 대중음악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수납은 순수예술로 받았으며, 2020년도의 ‘색깔있는 재즈축제’는 대중음악으로 적용하였으나 2021년도의 ‘색깔있는 재즈축제’는 순수예술로 적용하였으며, 교육청의 북콘서트는 순수예술로 적용시키고 사회복지사 힐링콘서트는 행사로 대관료를 적용하였다. ○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모, 티켓가격과 수익, 기획사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 의도에 따라 대관료를 결정한다고 하나, 앞으로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을 양분화시키기 어려운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며 퓨전 등 장르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 권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을 대비하여 모호한 사항에 대한 보편타당한 내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제목	[22-5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지적사항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1년12월

	<p>31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6,736,623원을 전입하고 사용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의 재무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제31조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¹⁾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²⁾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 임대사업과 보증사업 등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또한, 국세청 예규 법인-983, 2010.10.26.에 따르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문화재단에서는 현금성자산(보통예금)과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을 고유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부채로는 인식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사회에서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성자산(보통예금)과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합한 16,736,623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익처분을 하지 않아 법인세법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p>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p>	<p>▶ (행정상)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수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이사회 결의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잉여금 처분에 대하여 명확히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손금산입 항목이라 하며, 손금산입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준비금,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퇴직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다.
2) 1. 이자소득의 금액, 2. 배당소득의 금액, 3.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복지사업으로서 조합원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번호/제목	[22-54]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부평구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출자·출연기관,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거나,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러나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시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 사무국장 ◎◎◎ 위원 및 ◇◇◇◇◇ 관장 △△△ 위원에게 참석수당 140,000원(70,000원 x 2명)을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시정</p> <p>부적정하게 지급된 참석수당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55]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미사용(부평구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고, 공동구매 제도를 통해 유류를 구매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2.88% 현장할인 및 최대 1.1%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러나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를 구매하면서 주변 주유소가 조달청을 통한 공동구매보다 저렴한 것이 확실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하지 않아 예산 절감에 소홀하였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시정</p> <p>「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56]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부평구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 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천시내 지역과 왕복 50km 미만 거리의 출장지는 관내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은 관외 출장지로 구분하고,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0,000원을 지급하되 재단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³⁾에는 10,000원을 감액 지급하고 출장시간을 근무상황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제15조(준용규정)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출장거리가 왕복 2km 이내인 경우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하였고, 수련관 업무 외 출장에도 여비를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시정</p> <p>잘못 지급된 출장여비 115,000원에 대해 회수하시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22-57]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등을 포함하며, 월 지급되는 금액은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자녀는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월 1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그러나 부평구 성문화센터에서는 2020. 10. 26. 입사한 종사자 ○○○의 첫째자녀 ◎◎◎(2002.03.21.생)의 경우 2021년 3월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2022년 3월까지 지급하였으며, 둘째자녀 ㉠㉠㉠(05.05.04)의 경우 월 6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만원만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시정</p> <p>착오 지급된 가족수당에 567,740원(회수 240,000원, 추급 807,740원)에 대해</p>

3) 2020. 11. 16. 운영규정 개정, 개정 전 운영규정에 따르면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하되 재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2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여 추가지급 조치하시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4

현지 처분사항

번호/제목	[현지-01] 대관료에 대한 현금주의 적용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료와 관련하여 현재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대관료 예약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대관 철회시 환불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2019년 대관료 환불대상액 중 미환불액 261,800원이 2020년 비용으로 처리되고 미지급비용에 남아있다. ○ 재단에서는 현재 대관료 예약금액이 몇만원 수준으로 미미하여 중요성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나, 대관료는 용역의 제공이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향후 대관료 예약금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현지시정</p> <p>대관료에 대하여 발생주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제목	[현지-02]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지연 납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대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관 승인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용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부평구문화재단은 4건의 대관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고 지연 납부하는 등 대관업무에 소홀하였다.
처분요구 및 조치할사항	<p>▶ 현지주의</p> <p>대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p>

IV

수범사례

번호	제 목	비고
1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지역 및 노사 상생 프로젝트 운영	
2	기관별 시설물 통합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3	부평구문화재단의 주기적 계좌 관리를 통한 회계업무 투명성 강화 및 업무 안전성 보장	
4	공모사업 재원확보를 통한 사업의 저변 확대	
5	극장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최신 정보 제공	
6	지식문화 미디어 콘텐츠 창작공간‘나래’구축	
7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한 편의성 제고	
8	다양한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을 통한 ‘범문화적 도시’ 생태계 구축	
9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한꿈더하기’	

☞ 세부내용 : 붙임 참조